#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98

발의연월일: 2020. 10. 13.

발 의 자:이성만·정일영·이규민

홍정민 · 박성준 · 남인순

신동근 • 박찬대 • 오영환

송영길 • 유관석 • 송옥주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15조)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제15조의3) 육성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및 고시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법률에 위임근거 없이 고시로서신청기업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함.

다음으로, 정부조직개편(2017. 7. 26.)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 업부로 격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육성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 처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있는 지역특화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본 법률에도 명기하는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한 조항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는 본 법률에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평가 등에 소 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신청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신청 규정을 준용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제15조의3제3항).
- 나.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본 법률로 이관함(안 제9조제1항제11호 신설, 부칙 제 2조).
-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근거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로 변경하고,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근거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

#### 법률 제 호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한 다.

제9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 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 획의 수립) ①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과학기술기본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 신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산업 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 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본계획-----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워사업) ①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 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 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 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야 하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 <신 설> 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개발 지원사업 11. (생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 조에 따라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저 ·육성)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 (생략)

- 제15조의3(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저 육성사업 등) ①·② (생 략)
  - ③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 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u>
	_
	-
	_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세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u></u>
· 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	<u>}</u>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고	<u>1</u>
자 하는 기업에게 평가 등에 소	<u>`</u>
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u>-</u>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	-
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_
 세15조의3(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육성사업 등) ①・② (현행고	
같음)	'
(3)	
	_

제5항-----.